

LEGISLATIVE ISSUE BRIEF

한국법제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법제전문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수준높은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정책현안에 대해
실효성 있는 입법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6
JULY
법제이슈브리프
vol. 11



발간년월 2016년 7월(통권 제 11호) | 발행처 한국법제연구원 | 발행인 이원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34(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 자료문의 한국법제연구원 기획평가실
전화번호 82-44-861-0317 | 홈페이지 www.klri.re.kr |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닙니다.

기업구조조정의 법적 기초와 절차에 대한 이해

박기령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연구실
부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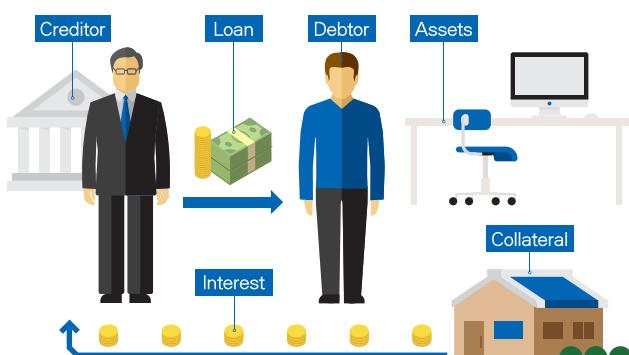
■ 기업의 생성·소멸과정과 기업생태계의 형성

- 한 때 세계 1위이던 한국의 조선·해운업이 최근 최악의 적자와 불황을 견디지 못하고 채권은행단에 의한 대규모 구조조정단계를 밟고 있다. 한때 샐러리맨의 신화로 통하던 팬택은 스마트폰 경쟁에서 탈락하여 워크아웃과 기업회생절차를 거쳐 지금도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재기를 도모하고 있으나, 회생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다. 새롭게 설립되어 성장하는 기업이 있는 반면, 활력을 잃고 소멸해가는 기업도 생기기 마련이다.
- 기업의 생성과 활동·소멸과정은 사람의 일생에 비유할 수 있다. 태아가 출산을 통해 권리능력을 가진 자연인이 되듯이, 기업 역시 일정한 설립절차를 거쳐 법인(法人)으로서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을 가지고 설립목적에 따라 영리활동을 한다. 법인인 기업은 사람과 달리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수명(壽命)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기업은 자연적 수명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기순환 등 외부적 경제상황이나 기업 내부의 잘못된 경영판단 등으로 인해 소멸될 수도 있고, 소멸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 정상적인 기업으로서 활동할 수도 있다.
- 거시적 차원에서 기업활동을 관찰하면,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이 설립되어 활동하고, 일정한 위기를 겪으면서 일부는 도태·소멸되고 다른 일부기업은 위기를 기반으로 더욱 성장하는 한편, 이미 성장한 대기업도 경쟁력이 약화되는 경우 도산하는 등 창업-성장-소멸-재창업의 과정을 겪는 기업생태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업생태계에서는 창업(설립)되어 활발하게 성장하는 기업도 있지만, 경쟁과정에서 활력을 잃고 도태되는 기업도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의 기업관련 정책과 법제설계를 위해서는 기업생태계의 활력 유지라는 목적 하에,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과 함께 도태되는 기업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재기를 돋는 방향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 기업의 자금조달과 기업구조조정의 필요성

-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기업인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활동 중 하나가 자금조달에 관한 부분이다. 은행 등 금융기관이 대표적인 채권자이며, 만일 해당 기업의 지분(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있다면 이는 주주가 된다. 만일 기업이 자신이 보유한 자산과 담보를 은행 등 채권자에게 제공하고 자금을 대출하며 그에 따른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 이 자금은 부채(debt)가 된다. 채무자로서의 기업의 자산형태 및 자금조달구조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기업의 자산 및 대출거래구조



- 통상 채권자는 원리금 상환에 대한 권리는 있으나, 해당 기업의 경영활동에는 참여할 수 없다. 만일 투자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기업은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으나, 투자금에 해당하는 일정한 지분 또는 주식(share)을 이전해야 하며, 투자자는 보유한 지분 또는 주식에 해당하는 의결권에 따라 경영에 참여하거나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만일 기업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적절한 수익이 창출될 경우라면, 채권자는 자신이 빌려준 원금과 이자를 받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기업에 대한 경영참여, 배당 또는 시세차익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문제는 외부적 경기순환이나 내부적 경영실패 등으로 인해 경영활동에 악재가 누적되어, 기업활동이 위기에 봉착할 경우에 발생한다. 즉 기업이 자신의 영업활동으로 얻은 수익만으로는 더 이상 채권자에게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거래당사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에 봉착할 경우, 기업의 위기가 가시화되며, 이 단계에서 기업구조조정의 필요성¹이 검토되기 시작한다.

- 경제적 위기에 봉착한 기업은 자신의 부채를 정리하고 경제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² 특히 기업의 경우, 기업 규모, 채권자인 은행 등 금융기관의 채권액 규모, 기업이 개입한 다양한 거래채권자, 근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개입되어 있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해당 기업의 실패로 인한 후속효과가 국가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신중하면서도 신속한 접근이 필요하다.

1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 기업 내에서도 보다 효율적인 경영이나 비효율 개선을 위하여 사전적인 차원에서 조직개편, 부채상환, 자기자본 비율 제고 등의 기업구조조정을 스스로 진행할 수도 있다. 다만 본 글에서는 기업구조조정을 실패 위기에 봉착한 기업이 사후적인 차원에서 수행하는 구조조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술하기로 한다.

2 본 글은 기업구조조정을 주요 검토대상으로 하므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배제한다.

■ 기업구조조정의 주요 이해관계자와 주요 쟁점

- 기업의 경제적 위기나 부실징후가 포착되고 기업구조조정이 필요한 단계에서 채권자가 중요한 이해관계자로 등장하여, 채무자인 기업과 함께 구조조정절차의 진행과정을 주도한다. 주주는 자기책임 및 유한책임의 원칙에 따라 기업실패로 인한 투자자금 회수를 청구할 권리가 없으나, 채권자는 기업이 실패하면 자신의 재산권에 중대

한 위협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구조조정절차의 주도권 자로서 주주나 경영진 대신 전면에 등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구조조정절차는 채무자인 기업과 채권자인 은행간의 줄다리기가 되며, 이 과정에서 공적 기관(금융감독당국 또는 법원 등)이 개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기업의 부실 징후가 발견되면, 채권자들은 기업의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자신의 채권 전액을 변제받는 것을 가장 원할 것이다. 그러나 일부 채무자에 대한 채무변제만 인정할 경우,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며, 기업의 자산 전체를 매각할 경우 기업은 더 이상 기업활동을 지속할 수 없으므로 결국 기업을 청산하고 소멸하는 수순을 끝낼 것이다. 만일 해당 기업이 일시적인 자금 유동성 위기가 있거나, 해외 불경기로 인해 일시적으로 부실해졌으나, 해당 기업의 지속적 운영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면, 즉 계속기업가치(going

concern value)가 있다면, 해당 기업을 청산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법령은 채권자간의 공평한 변제와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 확보를 통한 회생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절차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주요 쟁점

은행 등 채권단의 자율적 협약과 참여의 정도
기업구조조정절차의 진행시 채권단의 역할과 개입 정도
협약에 따른 구조조정절차 진행의 법적 구속력 및 법적 근거의 여부
공적 기관(법원 또는 금융감독당국)의 개입 여부 및 그 정도

■ 미국과 일본의 기업구조조정절차 관련 법령 및 특징

미국

- 미국 연방도산법(Bankruptcy Code)은 우리나라의 도산법 통합 및 채무자회생법 제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미국의 연방도산법제도는 주기적인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과 함께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으며 발전하였다. 즉 주(州)법의 영향력을 강조하고 채무자친화적(debtor-freindly)인 민주당 계열과 연방법을 강조하고 채권자 친화적(creditor-friendly)인 공화당 계열간의 오랜 논쟁을 통해 현재의 법체계, 즉 채무자 친화적인 연방법체계를 갖추게 되었다.³
- 최근에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고 채권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도산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⁴ 한편 미국의 경우 연방도산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절차와 채권은행단에 의한

워크아웃은 실무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 회생계획 작성 단계에서부터 투자자문역, 법률·채무컨설턴트 등 외부전문가가 관여하고, 법정관리 시작 전단계에서부터 채무조정이나 출자전환, M&A 등 다양한 기업구조조정기업이 활용된다.

3 David Skeel, "Debt's Dominion : A History of Bankruptcy Law in America", Princeton, 2001.

4 2005년 제정된 "도산 남용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Bankruptcy Abuse Prevention and Consumer Protection Act)"에 따르면, 도산신청의 남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조세채권의 공익채권적 성격을 강화하여 채무자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는 한편, 도산절차 개시에 따른 자동중지(Automatic stay)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채권자의 권리보장을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졌다.

미국 연방도산법의 체계 및 주요 내용⁵

구분	세부내용 및 특징
7장(Chapter 7)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청산절차(liquidation)로서, 우리나라의 파산절차와 유사함
9장(Chapter 9)	지방자치단체의 회생절차
11장(Chapter 11)	일반적인 기업회생절차로서, 채무자관리인(Debtor in Possession, DIP)이 이해관계자의 동의와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자의 채권을 일정비율 이상 변제하고 회생을 도모하는 절차로서, 각국의 기업회생절차의 제·개정에 큰 영향을 미침. 우리나라의 기업회생절차의 기본 골격이 미국 연방도산법 11장을 모델로 함
12장(Chapter 12)	가족경영농업인의 회생절차
13장(Chapter 13)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개인의 채무조정절차로서, 우리나라의 개인회생절차의 모델이 됨

5 김정환,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이해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금융연구원, 2016, 115면.

일본

- 일본의 기업구조조정수단은 우리나라와 같이 법적 정리(우리나라의 법정관리와 유사함)와 사적정리(우리나라의 워크아웃에 해당함)로 구성된다. 이 중 법적 정리와 관련하여 일본은 2000년대 들어 상법상의 회사정리 절차를 없애고, 청산형 절차(파산, 특별 청산)와 재건형 절차(민사재생, 회사갱생)로 구성하는 도산4법제를 정비하였다. 파산은 채무자가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수 없을 경우, 법원이 채무자의 총 재산을 포괄적으로 관리·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절차이며, 특별청산은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파산절차라고 볼 수 있다. 민사재생절차의 경우

회사갱생절차의 주요 내용을 간소화하여 중소기업의 효율적 회생을 위한 구조조정절차이고, 회사갱생은 민사재생절차와 달리 관재인이 선임되고 담보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등 법원의 엄격한 관리 감독을 받는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대규모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한다.⁶

6

일본의 은행을 대표하는 전국은행협회와 기업대표인 경단련은 우리의 워크아웃과 유사한 “사적 정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에 입각한 기업재생계획이 너무 엄격하고 주요 대상을 대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이용은 저조하다.

일본 재건형 절차의 주요 내용⁷

	민사재생 절차	회사갱생 절차
적용대상	제한 없음(개인도 가능)	주식회사
절차개시 후 경영권	현재 경영진이 계속 유지	갱생관재인
담보권 실행	원칙적으로 실행 가능	원칙적으로 실행 불가
계획안의 승인	재생채권자의 승인 – 법원의 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갱생채권자의 승인 - 갱생담보권자의 승인 - 주주의 승인 - 법원의 인가
재건을 위한 회사분할과 합병	회사법에 의한 절차 필요	갱생계획에 의해 실시 가능
소요기간	약 5개월	약 1년
변제기한	10년 이내	10년 이내

7 허준·위평량, “경기변동과 구조조정개선방안 – 취약산업의 재무구조 분석 –”, 산업연구원, 2013, 75면.

■ 기업구조조정절차에 관한 국내 주요 법령 및 내용

- 기업구조조정은 워크아웃, 법정관리, 자율협약, 공동관리절차 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파산, 도산, 회생 등 다양한 법률용어로 설명되기도 한다. 기업구조조정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만큼, 기업구조조정절차에 적용되는 용어 역시 상황에 따라 달리 사용된다. 이하에서는 기업구조조정절차에서 활용되는 법령과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한다.

채권은행단 자율협약

- 채무자기업에 부실징후가 포착될 경우, 채권자인 은행들은 채권단을 구성하여 자율협약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다. 이 단계의 구조조정은 법원이나 금융감독당국이 개입되지 않으며, 법령에 따른 절차가 아니므로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하여 채권은행단이 자율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자율협약에 참가하는 채권은행단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자율협약에 의한 구조조정 단계에서 채권은행단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기업구조조정 단계에서 채권은행단이 개별적으로 채권추심을 진행함으로써, 채무자기업이 파산하는 것을 예방하고 채권은행단의 채권액이 일부라도 공평하게 변제받을 수 있도록 상호합의하는 것이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워크아웃(공동관리절차)

- 구(舊)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은 신용공여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이 채권은행단의 공동관리를 받는 방식의 구조조정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절차를 통상 기촉법상의 워크아웃으로 지칭한다. 최근 2016년 3월 제5차 기촉법 제정을 통해 채권단의 범위를 기존의 채권은행에서 전체 금융채권자가 참가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법의 적용범위도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였다. 따라서 현행 기촉법에 따르면 이제 모든 기업들은 금융채권자들이 참여하는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를 활용하는 기업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단계의 구조조정절차는 법원의 개입 없이, 채무자기업과 채권단의 공동 관리에 의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기촉법은 금융채권자간의 이해관계 조정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와 원칙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며, 채권자간의 협상과 공동관리에 따라 채권자 주도로 기업구조조정을 유연하게 추진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변천과정

구분	주요 변경내용
제1차 기촉법 (2001.9. ~ 2005.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권은행 기업신용위험상 상시평가제도 자율화 •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 체결 전의 추가신용공여 금지조항 삭제 • 채권금융기관 보유 출자전환주식의 매각 제한 완화 • 출자 재산운용제한에 대한 특례의 적용기간 명확화
제2차 기촉법 (2007.11. ~ 2010.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기업의 신청에 의한 공동관리개시제도 도입 • 자금관리인 제도 폐지 • 기업이 워크아웃 중단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 • 대상기업에 조정신청권 부여 • 반대매수청구권자의 권리보호장치 강화 • 소액채권 금융기관 배제 범위 제한
제3차 기촉법 (2011.5. ~ 2013.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의결의 절차상 하자에 대한 취소소송 규정을 추가
제4차 기촉법 (2014. 1. ~ 2015.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6.30까지 시효 연장 • 상법상 회사와 모든 기업으로 적용범위 확대
제5차 기촉법 (2016. 3. ~ 2018.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6.30까지 시효 연장 • 상법상 회사와 모든 기업으로 적용범위 확대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기업회생절차 또는

기업파산절차(법정관리)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은 법원의 감독하에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엄격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통상 법정관리라는 일반적인 용어로 지칭하기도 한다. 채무자회생법상의 절차는 크게 기업회생절차와 기업파산절차로 구분되며, 기업회생절차의 경우 기업을 청산하기보다는 기업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보다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채권자의 양보를 통한 채무조정과 채무자의 자구노력을 통해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을 이행함으로써

구조조정을 하는 절차로서, 전술한 채권은행단에 의한 자율협약이나 기축법상의 워크아웃에 비해 법원의 관리감독이 개입되는 고강도의 법정구조조정절차라고 할 수 있다. 기업파산절차는 기업회생에 실패하거나, 채무조정을 통해 기업을 계속 운영하기보다는 기업조직을 청산하고 일정액을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기업을 소멸시키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기업에 적용되는 절차이다. 이전의 구조조정절차들이 기업의 회생과 재기를 목적으로 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는 반면, 기업파산절차는 모든 기업의 청산과 소멸을 전제로 하는 궁극적인 구조조정절차라고 볼 수 있다.

■ 기업구조조정의 목적과 향후 진행 방향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무기업과 채권금융기관간 사적인 이해조정과정에서 정부나 공공부문이 개입하는 사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말레이시아 등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IMF는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겪은 당시 아시아국가들이 당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관계를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법체계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시장의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적 위기로 인식한 정부가 나서서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형태의 법적·정책적 경험을 축적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입법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워크아웃과 법정관리가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제도는 상호보완적인 형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기업구조조정은 단순히 대마불사(too big to fail)의 신화를 구현하거나,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회생이 불가능한 좀비기업을 양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오히려 기업구조조정의 핵심은 기업생태계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부실기업의 정리와 재기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기업구조조정 관련 법령은 채권자협의회의 협력과 채무자의 자구노력, 법원 등 공적기관의 객관적인 모니터링과 감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구조조정의 성공을 위해서는 채무자기업과 채권자협의회 간의 상호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는 바, 채권자협의회의 협력을 통한 채무조정, 자금조달에 대한 법체계 정비와 함께 채무자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고 불투명한 기업운영을 감시·제재할 수 있는 법제정비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